

보도일시	2023. 2. 27.(월) (배포 후 즉시)	배포일시	2023. 2. 27.(월), 10:00
담당부서	기획평가국 환경평가과	책임자	과 장 전은혜 (033-760-6401)
		담당자	주무관 정혜원 (033-760-6407)

「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」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-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 ‘조건부 협의’ 의견 통보 -

-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(청장 김정환)은 2월 27일 「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」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‘조건부 협의’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.
 -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.3km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‘조건부 가결’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.
 -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‘부동의’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,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‘부동의 처분 취소심판’ 인용재결(‘20.12)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.
 -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·부당하며,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.
- ※ (재결사유)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·부당

□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(본안, 보완, 재보완)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,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,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*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.

* 공사시 활용 후 원상복구(작업로, 헬기 이·착륙장 등)

-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,480m에서 1,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,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.

-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*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.

* (보완시) 423일, 25,380회 → (재보완시) 2~3일, 44회

-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,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(36.91m/s) 보다 높은 설계기준(40~45m/s)을 적용하였다.

- 다만,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·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(Z형식)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.

□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·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'조건부 협의' 의견을 제시하였다.

-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,

-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,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.

□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동물상

-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·중·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.
- 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 계획과의 연계·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.

② 식물상

-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 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.

③ 토지이용, 지형·지질

-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'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' 방안을 강구하고,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.

④ 경관

- 주요 시설물의 규모·형태·색상·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.

※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해 실시된 경관영향예측을 위한 자연경관심의는 '조건부 가결'

⑤ 시설 안전대책

- 풍속,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·시공하도록 하였으며,

- 설계안전도검사(교통안전공단), 특별건설승인(국토교통부), 지방건설 기술심의(강원도) 등의 후속 인·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.

- 또한,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 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.

□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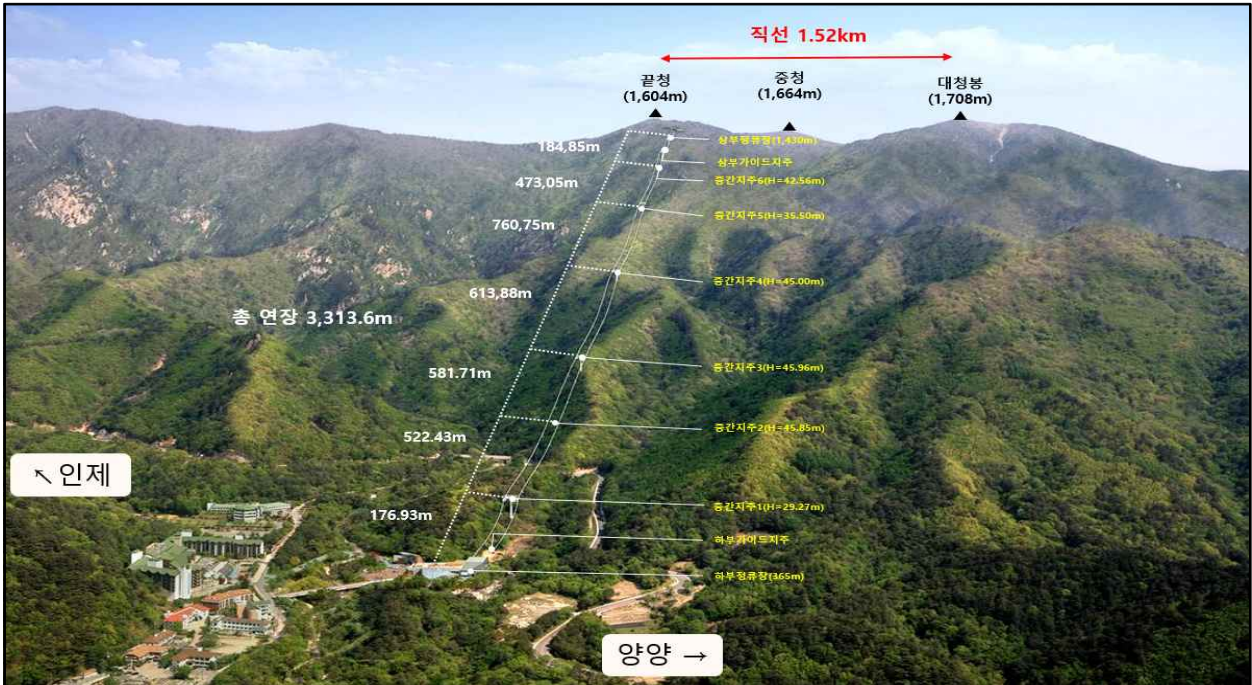
-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(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→ 5년)하고,
-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- **(전략환경영향평가)**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
- **(환경영향평가)**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- **(법정보호종)**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가 정해놓은 종
- **(자연경관심의)**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인·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
- **(전문검토기관)**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한국환경연구원,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생태원 등)
- **(사후환경영향조사)** 사업자는 해당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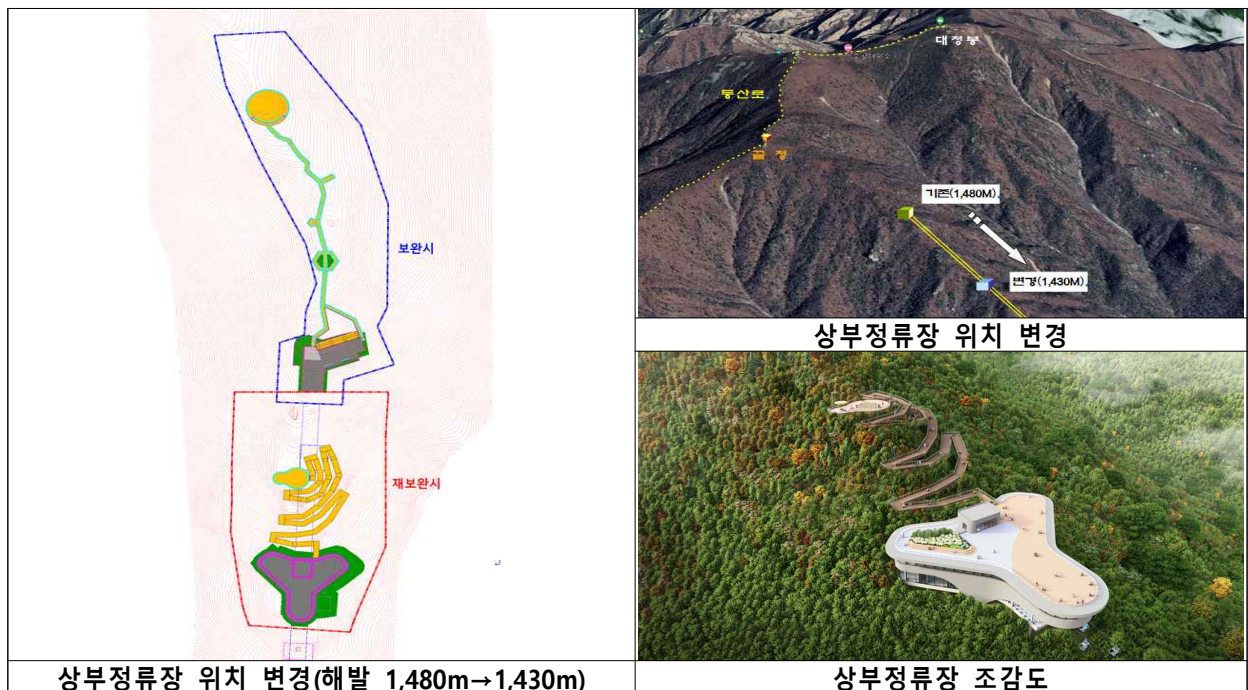
< 사업 개요 >

- ▶ (위치)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
- ▶ (노선)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~ 끝청 하단 (총연장 3.3km, 해발 1,430m)
- ▶ (형식) 1선 자동순환식, 8인승 53대 (시간당 최대 수송인원 825명) ※ 중간지주 6개소

□ 노선도



□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



< 추진 배경 >

- ▶ ('82년) 강원도,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결(2회)
- ▶ ('10년) 「자연공원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*으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* 연장 2km→5km / 정거장 높이 9m→15m
- ▶ ('10~'12년) 환경부, 석도설치 시범사업 결정(내륙 1, 해상 1) 및 공모

일 자	내 용
'15.08.28	■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조건부* 승인(3차 심의) * (7개 부대조건) ①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, ②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, ③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, ④시설 안전대책 보완, ⑤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, ⑥양양군-공원관리청간 석도 공동관리, ⑦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
'16.07.26	■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접수
'16.11.04	■ 1차 보완 요청
'19.05.16	■ 환경영향평가서(보완) 접수
'19.09.16	■ 부동의* 협의내용 통보(9.16) * (주요내용) 사업예정지는 극상림·아고산대 식물군락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사업 시행시 악영향이 우려되는바, 계획 및 입지가 적절하지 않음
'20.12.29	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'부동의 처분 취소' 인용재결* * (재결취지) ①입지 부적정(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준) 사유는 위법·부당, ②재보완 기회 없이 입지 부적정 전제하에 부동 의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
'21.04.23	■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
'21.06.30	■ 지역주민,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(재보완 철회 요구) 제기
'21.07.21	■ 양양군, 행정심판(재보완 처분 취소심판) 청구 ※ '22.12.6 양양군의 청구 취하로 종결
'21.09.16	■ 국민권익위원회(부위원장) 주재 고충민원 조정 착수회의 개최
'22.02.18	■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) 주재 고충민원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
'22.5~6	■ 고충민원 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* 개최(4회 / 5.18, 5.26, 6.9, 6.16) * 국민권익위원회, 원주청, 강원도, 양양군, 국립공원공단 ↳ '재보완 요구 항목 분야별 협의 및 조정방안 마련' 요청
'22.06.28	■ 재보완 세부이행방안 합의·서명(원주청·강원도·양양군)
'22.11.30	■ 국민권익위원회(부위원장) 주재 고충민원 조정* * (원주청) 재보완 요구내용 구체화 / (양양군) 구체화하여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
'22.12.28	■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(양양군→원주청)

□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밝힌 인용재결 사유('21.1.26, 중앙행심위 보도자료)

- (부동의 통보사유의 적법·타당성 여부)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·부당함
 -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, 그 평가항목 또한 각각 별도로 규정
 -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삭도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사업노선의 입지 타당성 여부가 검토됨
 - 이후 개정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부칙 제8조는 개정 전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, 공원계획의 확정으로 사업시행에 대해 형성된 사업자의 신뢰 등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
 - 따라서, 이 사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,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칙 제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
- (부동의 통보의 적정한 재량행사 여부)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
 -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장은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 -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·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 이행정도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
 - 법률상 규정된 보완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할 수 있음에도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함